

장애학생지도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2. 10. 11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수원대학교의 장애학생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, 장애분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총장을 자문 한다.

제2조(명칭) 위원회의 명칭을 “장애학생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자문) 총장은 기획·교무·입시·취업·학생복지 및 시설 관리·등 학교의 제반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함에 있어,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“위원회”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기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을 응한다.

1. 장애학생 지원 관련업무의 체계적·종합적인 시행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연계·조정
2. 장애학생 지원 관련 업무의 정책 제안
3. 장애학생 지원 관련 업무의 점검 및 평가
4.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된 재활복지특성화 사항
5. 기타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 본교의 처·실장 및 대학원장(특수대학원 포함)은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교외의 인사로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의 작성 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6조(주관부서) 위원회에 관한 업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한다.
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기타)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일반 제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며, 단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10월 11일 부터 시행한다